

회의자료 94-1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1. 일시 : 1994. 7. 22. 오전 9:00 - 12:00
2.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2층)
3. 참석자 명단

사 회 : 연 하 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 정 경 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지정토론

김 동 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 성 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응 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유 승 삼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 한 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장)
 백 문 규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연구실장)
 남 광 성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김 희 선 (보사부 사회복지심의관)
 신 영 철 (노동부 고용보험과장)
 이 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문 형 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 인 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부장)
 고 철 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4. 토의내용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 토론내용 정리 (94. 7. 22)

* 사회: 연하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형평과 국가발전의 경제적 효율 증 정책 우선 순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전략상 경제적 효율이나 양적 성장 쪽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발전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 한국의 현 모습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시장 실패 요인에 따르는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피할 수 없는 정책과제로써 대두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좁은 개념의 복지제도였다. 여러가지 사회경제 지표로 볼때 우리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 볼때, 1963년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은 기본 내용을 갖추지 못한 절름발이격의 법이었다.

본 공청회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관련한 보사당국과 보사연의 절충자료를 갖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관련단체, 학계, 언론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자 한다.

1. 김 동희 (서울대 법대 교수)

<기본법에 관한 일반적인 comment>

- * 기본법: 우리나라 법에서 기본법이라는 것은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그 중 국세기본법이 대표적인 기본법으로 잘 되어 있다.
(그외, 농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행정규제민원사무기본법 있다.)
-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기능: 사회보장에 관한 많은 산재된 개별법 간에 공통의 원리를 만들고, 법간 상충시 조화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 * 사회보장기본법
 - 1) 원칙적 사항을 규정해야 할 텐데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됨.
- 추상적인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
 - 2) 반대로 구속력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사회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역동관계, 특히 사회구성원들간의 대립에서의 타협점들이 반영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어찌보면 땀길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본법이 개별법 간 충돌이 발생할 때 기본법이 족쇄적인 장애요인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기본법에 관한 구체적인 comment>

- * 제1조: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방식을 국세기본법과 같은 기본법 형태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3조: 1항- 이 정의는 최광의 정의를 하고 있다.

넓게 정의를 하다보면, 사회보장제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텐데, 국가의 다른 법제와 국가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경계문제로 인한 사회보장의 고유성 상실이 우려된다.

2항- '직업보장'은 정의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보험 대상은 질병, 소득상실을 막아 주겠다는 것인데, 어느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개인의 직업 상실을 막아 주겠다는 제도는 없다. 실업보험은 직업상실로부터 오는 소득상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직업 자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5항- 보건, 주거, 교육, 고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경계선 문제 대두를 야기한다. 국가의 이를 위한 다른 시책도 있기 때문이다.

* 제4조: '부합'이라는 용어 부적절.

결국 개별법은 기본법에 맞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용어선택 부적절함

* 제5조: '하여야 한다'의 해석의 문제

단순한 선언적 의미인지, 법자체로는 구속력 있는 의무조항으로 국민의 청구권적 권리가 있는 셈인데 과연 어떤의도인지 알고 싶다.

<헌법10조>에 대한 해석에서 프로그램설/추상설/구체설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 기본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률로써, 여전히 선언적 규정 에 그친다면 안 맞는 것 같다.

* 제15조: 사회보장에 관한 수혜자가 아닌 민간부문이 사회보장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도, 조장할 필요가 있는지 환언하면, 민간(대기업, 독지가)이 시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보장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법에 근거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민간이 만든 시설을 사회보장시설로 보는 것은 후에 법적인 문제 제기와 국가책임의 소홀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2. 이 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유기성 부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괄법이나 개별법 상태로는 안되고 질충형의 기본법 체계가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연구검토와 시행과정 상 여러 복안을 마련하여 도입 자체보다는 보완 발전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의문점

-사회보장제도 간의 형평과 균형의 확보 요구됨.

노동관련 사회보장 제 법령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문제 심각하다.

이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으로 상당히 경계할 문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보장의 적정선: 효율 대 형평의 조화

이 두개념은 장기적으로 볼때 상충적 의미가 아니다. 즉, 형평성이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적 효율을 높여 준다. 1995년 도입될 고용보험도 실업자의 급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에 더 진정한 의미를 둔다.

- * 장기적인 여러가지 사회적 생산성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찬성하나 법적 제정으로 그 효과성은 불투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나친 기업복지위주의 근로자 복지정책은 사회형평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
- * 사회보장기금관리 노조 참여방안 모색하여 순기능을 강화하자.

3. 문 형 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 설득력이 필요하다.
-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 계획을 10년으로 하기보다는 5년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사회변화에 더 잘 부응해서 구체적 계획수립에 나을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를 장으로 사회보장법과 부처의 산재를 조정하고 확충하는 데는 찬성하나 이를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계획수립쪽에 치중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로써-청구권, 제도상의 분쟁조정, 사회보장전체에 관한 감독 및 평가 등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 사회보험의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소득재분배와 국가개입의 명시 필요
- * 제14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사회부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국가보다 향후 커질 수도 있는데 두가지를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4. 유 승삼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전체적 comment >

-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이념, 목표, 성격과 밀접한 관계다.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혀 주기 바란다.
예를들어, 일본의 경우 국가발전에 국민 수준은 미치지 못하는 반면, 스칸디나비아 3국은 기본이념에 따라 복지수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경제력이 첫 번째 제시한 이념을 실현한다. 즉 이들은 1930년대, 현 우리나라 경제수준보다 훨씬 낙후되었을때 절대 빈곤을 벗어나자마자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흔히 경제력이 없으면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 구체적 comment >

- * 제2조: 최저생활-어법상 맞지 않다.
'인간다운'은 이상적 개념인데 '최저생활'은 사망, 질병의 보호 수준으로 들이 모순된다. 최저생활보다 기본생활이 낫지 않을까.
최저생활보장이라 함은 빈민구제법과 같은 인상을 크게 주고 있다.

- *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의 수단이 되는 하위법의 필요성
정부의 이 법에 따른 필요한 법률의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법률 이에 모순되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첨가
대안- 1항에는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새로 제정하자
2항에는 구법을 개정하자
- * 제5조: 1항- ‘국가발전에 부응하도록’
이는 국가의 재정투입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우려.
- * 제8조: 국무총리 위원장
이는 각부처간 의견조정이나 마찰이 있을 부분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국무총리가 하지 못한다. 행정수반(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 제17조: 전달체계와 종사자에 관한 규정 첨가
- * 제18조: 정보공개(이는 지적능력 및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는 충분하다) 외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대상들을 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3항을 만들어 대상자 조사 등의 적극적인 태도도 첨가하자.
- * 사회보장법 만든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는 헌법으로 족하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청구권적 조항이 들어가야 존립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의 의무회피 시 적정 절차를 통해 강제화할 수 있는 소송권이 있어야 한다.
- * 제4장 :수급권에 관한 권리를 앞세우고 제한을 하는 것이 법구성상 나을 것 같다.

5. 최 성 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사회보장기본법이 구체적인 권리설로서 상당한 부분을 법에 반영한다는 점은 찬성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생활보호대상자의 헌법소원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는데, 소원에 대한 보사부의 입장과 이법 제정 참여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보장 유무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다.
-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사회보장보다는 사회복지가 나을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의한 물질적인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고 ‘사회복지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더 바람직하다.
- * 제3조: 1항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의 하나의 방법이고, 사회복지란 문제의 해결적 개념이며, 관련복지제도는 제도적 바방법으로 이들은 등위의 개념이 아니다.
-대안: 사회보장이라함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국가 일반재정을 늘 국민에게 제공하는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및 기타 관련된 복지제도를 말한다.
- * 공적부조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공적부조’ 대신 ‘사회부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 관련제도에 ‘주거보장’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회보장핵심적 서비스에는 주거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보장

이없는 사회보장은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주거보장을 사회보장의 핵심적 서비스에 주거보장을 첨가해야 한다.

- * 가족정책적 시각의 반영이 미흡하다.
기본법은 기존의 산재된 개별법의 통합이라는 취지에 의거하여 만들었는데 이런 통합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되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법적 조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 대안: 5조 1항으로 신설하거나 8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하자
-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문제
현 사회복지의 개별법에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또 신설한다는 것은 역할의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의 명확한 천명이 요구된다.
- 대안: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의 각종 심의위원제도를 통합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 제 9조: 10년마다의 장기계획 수립은 계획수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행하는 실효성이 중요하다.
- * 제13조: 최저생활수준은 보통 새보자 대상 선정기준으로 인지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생계비 계측조사를 통한 매해 정부의 공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제13조 2항: 사회부조의 국가책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첨가해야 한다. (제3조 3항에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으므로)
- * 제16조 3항: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서 '일정소득'에 관한 어느정도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6. 강 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 사회보장은 제도와 투자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현실적 가능성을 감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다.
- * 한국형 복지모델이 무엇인가하는 정립이 선행된 뒤, 법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 * 제3조 2항, 3항: 기존에 있는 제도
4항, 5항: 욕심은 앞서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4항의 시설이용은 예를들어, 탁아소가 점차 민간 영역화되는데 이는 국가부담의 증액 및 국가일의 민간분담으로 규제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삭제 바람직하다.
- * 제4조: 기술상의 문제로 관련부처의 반대가 예상된다.
-대안: 제2조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개별법을 제정·개정해야 한다.
-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언급은 찬성한다.
- * 제14조 2항: 사회보험, 사회부조의 국가책임과 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 제9조: 사회보장장기계획의 10년은 좋은 생각이다. 장기계획구상에 따르는 중기계획으로 5년도 바람직한 안일 것이다.
- * 제5조 1항: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한다.

이는 미국처럼 사회보장세를 신설하자는 것인지 알고 싶다.

- * 제15조: 민간참여 /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시 논란이 될 것이다.
- * 제16조: 일정소득수준-기술상 문제야기
-대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소득 수준

7. 남 광 성(국민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 *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명시 및 개별법 간의 한계나 곤란한 점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로 됨
- * 제1조: 목적에 '국민복지증진'에 더불어 '사회정의구현'을 첨가하자.
- * 사회보험 기여자는 자랑스럽게, 사회부조영역에 속한 자는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선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자립 자활을 유도하자. 기여유무에 따른 급여의 차이를 보여 기여하도록 유도하자. (자산조사)
- * 사회보험의 소요비용 국고부담이 애매하다. 이념과 연계하여 국가가 부담할것을 관리운영비로 국한해야지, 급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 전달체계
모든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요구된다.
경영의 효율화 측면도 고려.
-대안 : 지방의 사회보장센타의 수립-모든 정보 포함

8. 조 한 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장)

- * 기본법 제정에는 동의하나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다.
- * 제4조: 헌법-기본법-개별법 으로 기본법이 연결고리, 조정의 의미로 쓰이나 얼핏 보면 기본법이 개별법의 상위개념으로 개별법 시행의 커다란 제약조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구체화된 안이 필요하다.
- * 사회보장의 정의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수단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시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검토가 요구된다.
- * 사회보장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언급해야 한다.
- * 제12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노사대표자의 참여로 등으로 구체적 명시 요구된다.
- * 제16조: 비용 부담의 논란이 크다.
제도 운영비의 국가부담의 구체적인 명시는 개별법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 제21조: 수급권의 제한
이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의 수급권의 제한 근거마련에 좋을 것 같다.
- * 장기계획 10년 관련
증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수립으로 매해 발표하는 방식 채택하자.
- * 급여 수준
추상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존비도 안되는 급여는 사회보장 혜택은

아니다.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화 필요하다.

- * 직업보장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방지, 예방조항으로 직업보장 자체가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9. 백 문 규(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연구실장)

- * 제1조와 제4조의 통합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의 공통사항, 구체적인 방향을 포함하자.
- * 제2조와 제3조
기본이념과 사회보장 정의 중복된 감이 있다.
사회보장제도 정의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장을 수단시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 * 제5조: 1항은 제도적 장치 마련의 상당히 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데 2항과 3항은 상당히 적은 문제를 제기하여 균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규정 체계상 2항, 3항으로 따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 * 최저생활
헌법상 최저생활 논리가 사라졌는데, 구체적인 법률에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어를 바꾸자.
- * 제16조 2항 -비용부담 문제
사회보험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도 포함하자.

10. 김 용 일

-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적 정리를 하자.
- * 사회보장기본법을 과감하게 사회복지기본법으로 확대해석하여 사회복지기본법 속에 보장법과 서비스법을 이원화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1. 유 광 호

- * 청구권 등을 알고 있는데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은 현실적인 여건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 향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이 바로 오늘 안이 된 것이다. 이 시안은 '청구권'이나 '노력'을 '해야 한다'로 하지 못한 것은 관련부처의 비협조가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타협한 것이 이 시안이 된 것이다.

12. 정 경 배 발췌자의 답변

- * 김동희: 상당히 고려하겠다.
- * 이 선: 연금의 재원고갈/기금관리 문제 고려하겠다.

- * 문형표: 분쟁조정/소득재분배 반영하하겠다.
- * 유승삼: 최저생활 빈민구제법/전달체계/사회보장심의위원회 대통령령 고려하겠다.
- * 최성재: 사회복지기본법 고려하겠다.
- * 강응선: 한국형 복지모델 수립후 법제화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노력하겠다.
- * 조한천: 운영의 자율성의 의견 좋았다.
- * 백문규: 최저생활-기본생활로의 명칭 재검토하겠다.
- * 김용일: 일본법의 모방 이번에는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

13. 신 영 철 (노동부 고용보험과장)

- *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부처와의 협의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감안한 흔적이 보인다.
- * 개별법에서 국가의 비용부담의 문제 논란이 컸다.
고용보험제도도 사회보험적 측면보다 고용정책적 측면에 역점을 두어 강조한 것이 도입에 순조롭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가의 책임문제 구체화 미흡하다.
- * 사회보험의 직업보장 문제
고용보험 자체가 사회보험과 고용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고용정책을 사회보장에 포함한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제8조 : 2항 5호 사회보장 급여수준보다 급여간의 연계문제 논의 더 필요하다.
3항 - 실무위원회 중복되니 불필요하다.
- * 제9조 : 10년장기계획보다 5년의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이 크다.
- * 제21조: 1항과2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별도의 조문이 필요.

14. 김 희 선(보사부 사회복지심의관)

- * 한국형 복지모형 금년 1월에 사회복지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설정했었다. 여기서 법 제정시 참고를 했다.
- * 청구권
헌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의 3대 지주인데 뺀다는 것은 질름발이격의 법체계가 된다.
- * 관련복지제도 첨가
우리의 의도는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등 전반을 다루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국가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 교육, 고용 보장을 해주기 위해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한 것이다.
- * 10년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년마다 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
- * 국가발전 수준의 부응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국가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최저생활 수준**

의식주를 해결하며 인간다운 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을 의도했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어느정도 틀을 마련하여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고 국력신장의 반영이며 그동안 사회 복지에 대한 철학의 법적 미정립의 반성으로 이 법의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국적 복지모델에 입각하려고 고심했고, 장기적인 법체계가 되도록 노력했다. 이 법이 국민적 공감대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5. 연 하 청 (사회자)

* 공청회는 본 시안을 보완하고자 하며 안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목적이다. 이 기본법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으로 법적 기초로 기본적인 사회보장 이념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의견은 하위법에서 나올 것이다.

16. 강 수 립(민주당 국회의원)

* **이념 설정 문제 :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

미국 헌법은 '진보적 사법적 적극주의'로 워렌 대법관이 천명했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재산권의 권리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

제21조: 고전적 방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에 뒤떨어진다.